

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(수시)적성검사 연기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		
	주민등록번호	건설기계조종사면허번호	
	주소		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	
연기 사유	[]해외 체류 []질병 []구속 []부득이한 사유 []재해 []기타		

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81조제3항, 제8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 _____ 년 월 일 (서명 또는 인)
대리인 _____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1. 신분증, 연기사유 증명서 * 대리신청 하는 경우: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*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.	수수료
업무담당자 확인사항	1.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(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병적증명서(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_____ (서명 또는 인)

유의사항

- 건설기계조종사 정기(수시)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기간 경과 전에 연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건설기계조종사 정기(수시)적성검사 연기신청을 한 사람은 연기사유 해제일 부터 3개월 내에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.